이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

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

제정 1996 · 3 · 1 규칙 제 34호 전문개정 1999 · 3 · 5 규칙 제155호 전부개정 2023 · 3 · 14 규칙 제745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,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,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명예퇴직수당

- 제2조(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)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 정일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3조(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)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(이하 "수당 지급규정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.
- 제4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)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

이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

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-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,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제5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) ① 시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·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. 다만, 「공무원연금법」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 선한다.
 - 1. 상위계급의 공무원
 - 2.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
 - 3.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
 - 4.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 - 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.
 - ③ 이천시인사위원회는 수당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6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)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 게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, 지급장소, 신청서류,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7조(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)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직접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.
 - ② 유족의 범위,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

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장 조기퇴직수당

- 제8조(조기퇴직수당 근속연수의 계산) 수당 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(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 정직·휴직·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.
- 제9조(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 지급대상 및 인원, 지급신청기간,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) 수당 지급규정 제9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11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)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(계)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(계)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(계)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(계)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.
 -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이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

- 제12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)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·결정함에 있어 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(계)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, 동일직(계)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당해직(계)급의 장기근속공무원
 - 2.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장기근속공무원
 - 3.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- 제13조(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)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〈2023·3·14 규칙 제745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 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(제2조 관련)

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	명예퇴직 예정일
1. 1. ~ 1. 15.	2. 28.
3. 1. ~ 3. 15.	4. 30.
5. 1. ~ 5. 15.	6. 30.
7. 1. ~ 7. 15.	8. 31.
9. 1. ~ 9. 15.	10. 31.
11. 1. ~ 11. 15.	12. 31.

비고

- 1.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.
- 2.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	- 해당하는 곳에 "√"3	표를 합니다	ł.							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	일						처리기간	수당 등 지 제7조·제8	3조에 따름
	① 소속								④직급_	•계급•	직무군
	② 전(前) 소속 (특수경력직공무원과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 경우만 작성)	임기제공두 원으로 신분	² 원이 아닌 경력직 ² 단절 없이 임용된	③ 공무원 -	뿐	[] 일반적 [] 특정적	 - -)	(호봉	;)	
	하근			⑥ 주민등록	<u> 서호</u>						
시됩이	⑤ 성명 <u></u> 한자			① 주소							
신청인	⑧ 전화번호(자택)			⑨ 근속기	간	년	월		⑩ 정년일	길	
기재란	① 비위·형벌	사항 [] 있;	음 []없음	의유 자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	사 중 공무 구 우 확정 제 : 저 : 제		L행 중 조제3호 의결 요구 네132조 선고형: 제356 형량: 네356조(선고형:	[] 현 상에 따려 '중[] 항 까지에 '3조에 구 에 규정된	상사재판 계 나 수사 결 ³ 징계처분으로 당: 규정된 범조) 가정된 범죄 리 범죄(직두	류 중 라가 통보도 : 승진임용 저 : 관련 형의 (직무 관련 : 관련) 형의	니어 징계 한 기간 중 선고유예) 형 확정
	⑫ 정년 구분	 []연령	저녀 []게=	급정년		<u>③</u> 정년			, , ,		
		후 특수? 임용 후		[] 임기제 [] 별정직			월	확인	세(년) 인사담딩	 }관	(인)
	(화 정년잔여기간 (수당자급개상기간)	Ĺ (년 개월 년 개월)	16 수당청	구액	및 산출니	내용	1			
소속 기관 기재란	⑪ 비위 · 형벌 사항 확인	[] 있		[] 비위조/ 기지방: 의결 요형(刑) 이형(刑) [] 「형법일 [] (현업일 [] 「형법일 [] (현법일 (선고일	: 제 : 저 : 제(필요 ' 중 [] 징계((확정일 : 129조부터 전 () 355조 또는 355조 또는 전	의결 요구 세132조 선고형: 제356 형량:	² 중 [] , 형 까지에 6조에 구	징계처분으로 량 : 규정된 범죄 } }정된 범죄 티 범죄(직무	(직무 관련 · 관련) 형의	ll한 기간 중 l 선고유예) 형 확정
		확인	인사담당관	(인)	연i	금담당관		(인)	감사담딩	; 관	(인)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
1. 인시기록카드 시본 1부. 디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첨부서류 2. 명예퇴직원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 3. 경력증명서 1부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										
위의	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										
이 천 시 장 직인											
이천시장 귀하 비고: 1.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·연금·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.											
비고: 1.	신청인 기재란은 신	청인 본인	l이 자필로 적고, ·	소속기관 기재	란은	해당 인사 •	• 연금 •	감사담	당자가 적	습니다.	

- 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 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				처리절차				
신청서 작성	→ [접 수	→	지급결정 및 통보	→	신청인 통지	→	지 급
신청인		소 속 기 관		이 천 시 장		소 속 기 관	_	이 천 시 장

작성방법

- 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- 2. ③란은 해당란([])에 "√"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 류를 ()에 적습니다.
 - 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종류를 적습니다.
- 3.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 •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- 4.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5.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"√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
- 6. ⑫ ~ ⑪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·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(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).
- 7. ⑫란은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- 8.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"세" 또는 "년"으로 적습니다.
- 9. ⑯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- 10. ⑪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("√" 표시),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명 예 퇴 직 원

1. 소 속:			
2. 직 위:			
3. 직급•계급:			
4. 성 명:			
○ 명예퇴직 사유:			
※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,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, 직위, 시기(기간) 분	등을 명.	시합니다	ŀ .
○ 명예퇴직 신청일:			
○ 명예퇴직 희망일:			
※ 명예퇴직 희망일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적습니다.	명예퇴직	니 신청 자	·만
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([]정기·[]수시) 명예퇴직하려고 바랍니다.	하니	허락해	
	년	월	일
신청인	(서등	병 또는	인)
이 천 시 장 귀하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		처리기간	「지방공무원 명예퇴 직수당 등 지급 규 정」 제11조에 따름	
소속		공무원 구분	[]일반직(암기제 제외 []특정직() []별정직) 직급·직무· (호봉)	군 또는 상당 계급	
성명	(한글) (한자)		주민등록번호			
	주 소 □□□-□□□					
전화번호 (자택)		최초 임용일	년 월 일	근속기간	년 개월	
수당 청구액			산출내용			
「지방공무원	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	」 제11조에 따라 조기	기퇴직수당 지급을 위	위와 같이 신청	헝합니다.	
		신청인		Ļ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
	귀하				(10 75 5)	
첨부서류	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조기 퇴직원(지방공무원 명예				어 으	
		확인 인시	l담당		(인)	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지하						
비고: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.						
		처리절차				
신청서 작	성 → 접 수	→ 지급결정 및 통		통지 →	지 급	
신청인	소 속 기 관	이 천 시 징	· 소속기	판	이 천 시 장	

이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현	한 규칙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

[별지 제4호서식]

조 기 퇴 직 원

1. 소 속:					
2. 직 급:					
(상당계급)					
3. 성 명:					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	조기퇴직하려고 하니	허락해 주시기	바랍니다.		
			년	월	일
	신청인		(서등	명 또는	인)
이 천 시 장 귀하					